

# '92年度永登浦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動議案 審查報告書

제안년월일 : 1992. 7.

제안자 : 행정재무위원회

##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2. 7. 6 영동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92. 7. 8

다. 상정일자 : 제11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92. 7. 15) 상정 수정안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金興權)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영동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92년도 5월 7일 구의회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이후 신청받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골자

○ '92년도 세출예산에 사회복지관 부지확보를 위하여 6억원을 확보 하였으나 부지를 물색치 못하여 당초계획에 동의받지 못한 취득재산과 대부분 20년이상 소규모 필지를 점유 사용하면서 매각 신청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 '92당초 동의

- 취 득 : 2건 13필지 908.7m<sup>2</sup>

- 매 각 : 27건 35필지 1,533.8m<sup>2</sup>

#### ○ '92변경(추가) 동의안

- 취 득 : 1건 1필지 258m<sup>2</sup>

- 매 각 : 7건 9필지 496.6m<sup>2</sup>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金熙中)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첫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유재산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여 생산적인 시설물을 건립 운영하여 영세노인의 여가선용 및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장 제공등을 통하여 민·관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영동포1동 618-42 대지 258m<sup>2</sup>를 취득하여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며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 6억원은 구비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 고>

영동포1동 복지관 건립내역

위 치	규 모	용 도	비 고
영동포 1동 618-42	· 대지 : 258m <sup>2</sup> (78평) · 건물 : 지하 1층 지상 4층	· 어린이집 : 지하 1층 지상 1층 · 노인 정 : 2, 3층 · 독서실 : 4층	대지는 '92년도 구입하고, 건축은 '93예산편성 건축

둘째, 구유재산중 장차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하되,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는 재산관리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재부자를 위해서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림동 604-130, 603-5 대지 79m<sup>2</sup>의 5건은 매수자가 담장이나 건물등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신길동 362의 26 대지 81m<sup>2</sup>은 경제기획원 주택조합에서 매수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고>

매 각 대 상 재 산 내 역

매 각 재 산 의 표 시			매 수 신 청 인		현 용 도
지 번	지 록	면적(m <sup>2</sup> )	주 소	성 명	
대림3동 604-130 603-5	대	10 69	대림동 604-130	모 예 심	담장안 점유
신길1동 94-46	대	5	신길동 94-22	오 무 용	담장안 점유
대림3동 604-131	대	106	대림동 604-131	이 혜 중	건물로 점유
신길1동 193-22	대	13	신길동 196-33	정 광 준	담장안 점유
신길6동 475-2	대	186.6	동작 대방 395-2	안 성 기	주차장 활용
대림1동 906-117 126	대	20 8	대림동 907-50	강 영 진	담장안 점유
신길3동 362-26	대	81	종로구 경운동 90	경제기획원 직장 조합	나 대 지

4.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재적의원 11명

- 출 석 11명
- 찬 성 11명
- 반 대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2. 7. 15 행정재무위원 한기태

나. 수정이유

매각동의를 요청한 구유재산증 불승인 대상 구유재산은 구민의 복지시설 건립 대상 토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하려는 것임.

다. 수정 주요골자

'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6-4종)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상 수량	파표또는 평 가 액	매각시기	매 각 사 유	매 수 회 망 자 주 소 · 성 명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2	대지	신길1동94-46	5	5	5,500	하반기	신청인의 담장안에 위치	영동포구 신길동94-22 오 무 용
5	"	신길1동193-22	13	13	14,30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동포구 신길동196-33 정 광 준
7	"	대림1동906-117 906-126	20 8	28	26,60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동포구 대림동907-50 강 영 진

위의 총3건 4필지 46m<sup>2</sup>만 매각 동의하고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상 수량	파표또는 평 가 액	매각시기	매 각 사 유	매 수 회 망 자 주 소 · 성 명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1	대지	대림3동604-130 603-5	10 69	79	74,102	하반기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동포구 대림3동604-130 모 예 심
3	"	대림3동604-131	106	106	99,428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로 점유 사용	영동포구 대림동604-131 이 해 중
4	"	신길3동362-26	81	81	81,000	"	직장주택조합 사업시행 지구안에 위치	종로구 경운동 90 경제기획원 직장주택조합
6	"	신길6동 475-2	184.6	184.6	382,000	"	신청인의 대지와 접하여 나대지(주차장)상대로 점유 사용	동작구 대방동 395-2 안 성 기

영동포구청장이 제출한 위의 총4건 5필지 450.6m<sup>2</sup>는 매각 동의를 부결함.

# '92年度永登浦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修正案

제안년월일 : 1992년 7월 16일

제안자 :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 199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총괄

- 취득 1건 : 토지 1필지 258m<sup>2</sup>

- 매각 3건 : 토지 4필지 46m<sup>2</sup>

○ 199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자주소·성명
	지목	소 재 지	수량				
1	대지	영동포구 영동포1동 618-42	258	600,000	하반기	복지관건립	영동포구 영동포1동 618-42 김철기

○ 19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상 수량	과표또는 평 가 액	매각시기	매 각 사 유	매 수 회 당 자 주 소 · 성 명
	지목	소 재 지	일련회수량					
2	대지	신길1동94-46	5	5	5,500	하반기	신청인의 담장안에 위치	영동포구 신길동94-22 오무웅
5	"	신길1동193-22	13	13	14,30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동포구 신길동196-33 정광준
7	"	대림1동906-117 906-126	20 8	28	26,60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동포구 대림동907-50 강영진

# '92區有財產管理計劃變動動議案

의안 번호	83
----------	----

제출년월일 : 1992년 7월 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92년도 5월 7일 구의회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이후 신청받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것임.

## 2. 주요골자

'92.세출예산에 사회복지관 부지확보를 위하여 6억원을 확보 하였으나 부지를 물색지 못하여 당초계획에 동의받지 못한 취득재산과 대부분 20년이상 소규모 필지를 점유 사용하여 매각신청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92 당초동의
  - 취 득 : 2건 13필지 908.7m<sup>2</sup>
  - 매 각 : 27건 35필지 1,533.8m<sup>2</sup>
- '92 변경(추가) 동의안
  - 취 득 : 1건 1필지 258m<sup>2</sup>
  - 매 각 : 7건 9필지 496.6m<sup>2</sup>









### 재산위치도 토지대장등 관련공부 목록

구 분	목 록	비 고
취 득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취득	
매 각 1)	매수신청인의 주거용건물과 담장안에 점유 사용	
2)	매수신청인의 담장 안에 점유 사용	
3)	매수신청인의 주거용건물로 점유 사용	
4)	직장주택조합 사업시행지구 안에 위치	
5)	매수신청인의 주거용건물과 담장 안에 점유 사용	
6)	매수신청인의 대지와 접한 나대지(주차장) 상태로 점유	
7)	매수신청인의 주거용건물과 담장안에 점유 사용	

## 취득대상재산현황

연번 : 1

###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 산 의 표 시			취득대상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적(m <sup>2</sup> )			
영동포1동 618-42	대 지	258	258	개인(집철기)	

###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현용도)	취 득 후 용 도	비 고
주거용으로 집주인 거주	복지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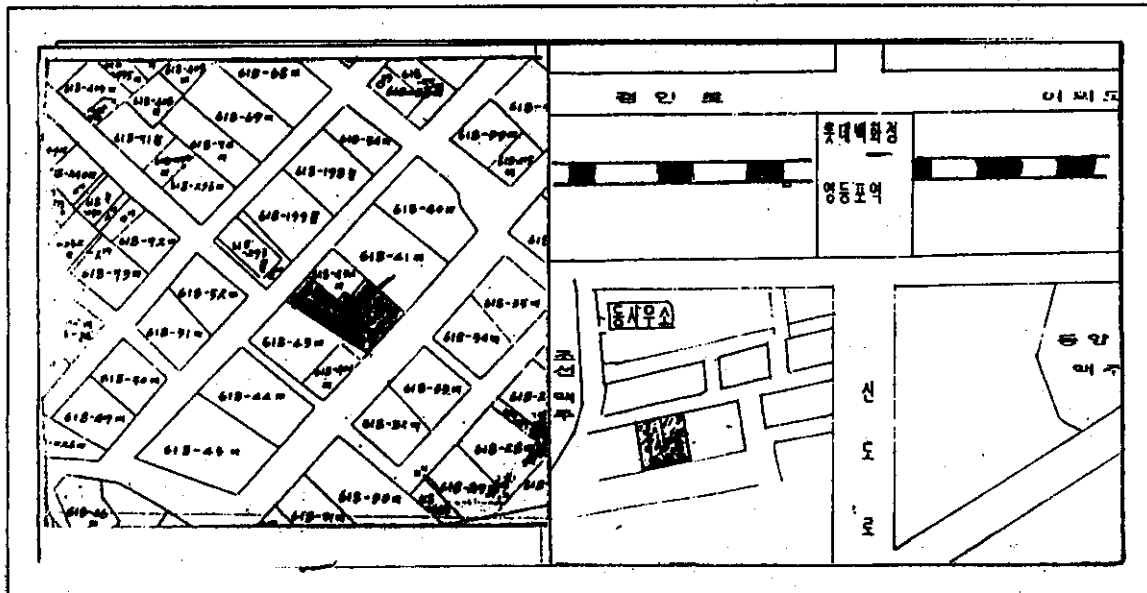
### 3. 취 득 사 유

- 도시영세민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제공
- 저소득층의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학습장(공부방) 제공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 4. 소 요 예 산

600,000,000 원 (6억)

### 5. 현 황 도



###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 1

####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산의 표시			매각상 면적(m <sup>2</sup> )	매수신청인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주	소	성명	
대림동604-130 603-5	대지	10 69	79	영등포구 대림3동604-130	모예심	

#### 2. 재산관리현황

관리상태(현용도)	토지의특성	비고
점유인의 주택, 담장안에 위치하고 있음.	준공업지역으로 2m 도로에 접함.	

#### 3. 처분 사유

- 상기 구유재산은 매수신청인(모예심)이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점유 사용하고 있음.
- 20년 이상 점유
- 점유인이 건축코자 매수 신청

#### 4. 처분 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조 및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 제1호

#### 5. 현 황 도

**법례**  
=====

공유지 : □

토지 : □

점유부분 : □  
(매각부분)

담장선 : —

##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 2

###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산의 표시			매각대상 면적(m <sup>2</sup> )	매수신청인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주소	성명	
신길1동94-46	대지	5	5	영등포구 신길동94-22	오무용	

### 2. 재산관리현황

관리상태(현용도)	토지의 특성	비고
점유인의 담장 안에 점유	일반주거지역으로 4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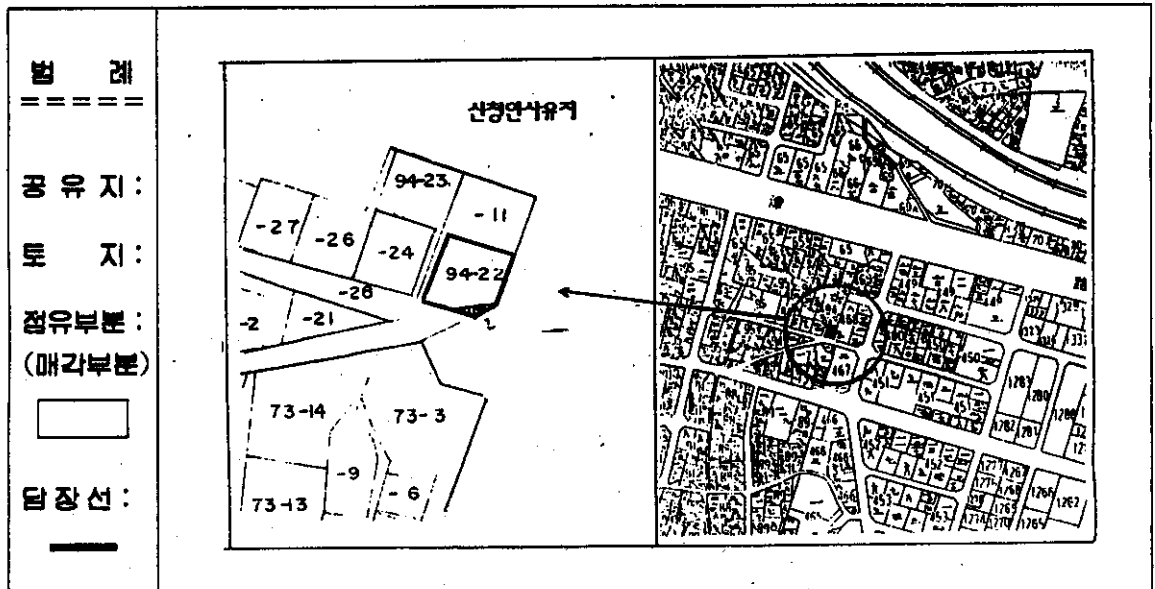
### 3. 처분 사유

- 상기 구유재산을 매수신청인(오무용)이 담장안에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
- 점유인이 신축교차 매수 신청

### 4. 처분 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조 및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 제1호

### 5. 현황도



#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 3

##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산의 표시			매각상	매수신청인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면적(m <sup>2</sup> )	주소	성명	
대림3동604-131	대지	106	106	영등포구 대림동604-131	이혜중	

## 2. 재산관리현황

관리상태(현용도)	토지의 특성	비고
주거용 건물로 점유 사용	준공업지역으로 4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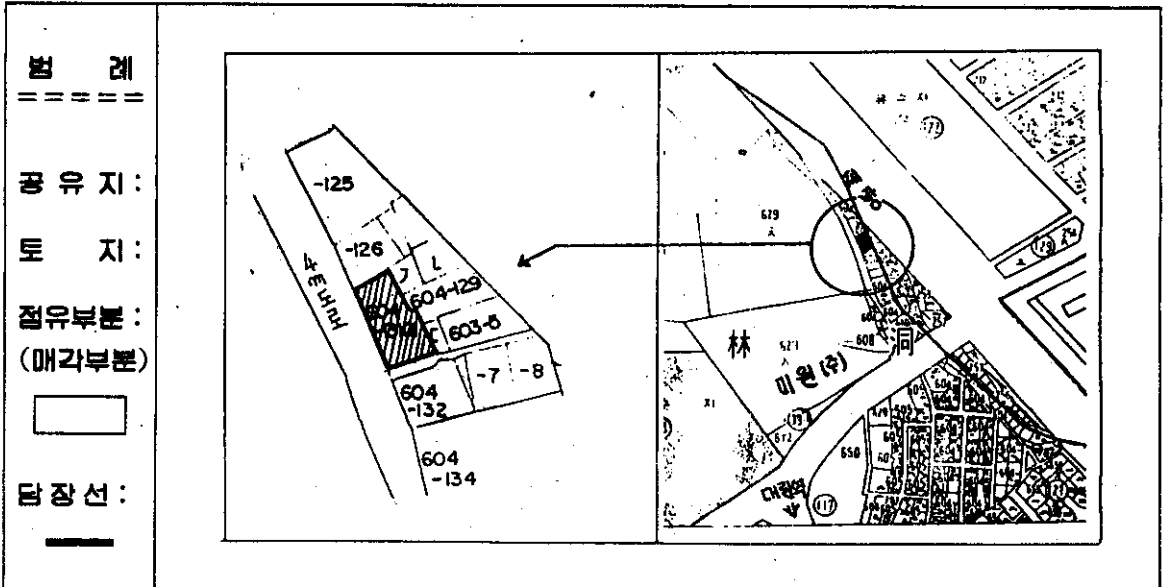
## 3. 처분 사유

- 상기 구유재산을 매수신청인(이혜중)이 주거용건물로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특정건축물신고등재)
- 점유인이 건축코자 매수 신청

## 4. 처분 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조 및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 제2호

## 5. 현황도



##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 4

###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 산 의 표 시			매 각 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적(m <sup>2</sup> )	면적(m <sup>2</sup> )	주 소	성 명	
신길3동362-26	대지	81	81	종로구 경운동 9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직장주택조합	

### 2. 재산관리현황

판 리 상 태(현용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나대지 상태로 점유	일반주거지역 사업시행지구 안에 위치	

### 3. 처 분 사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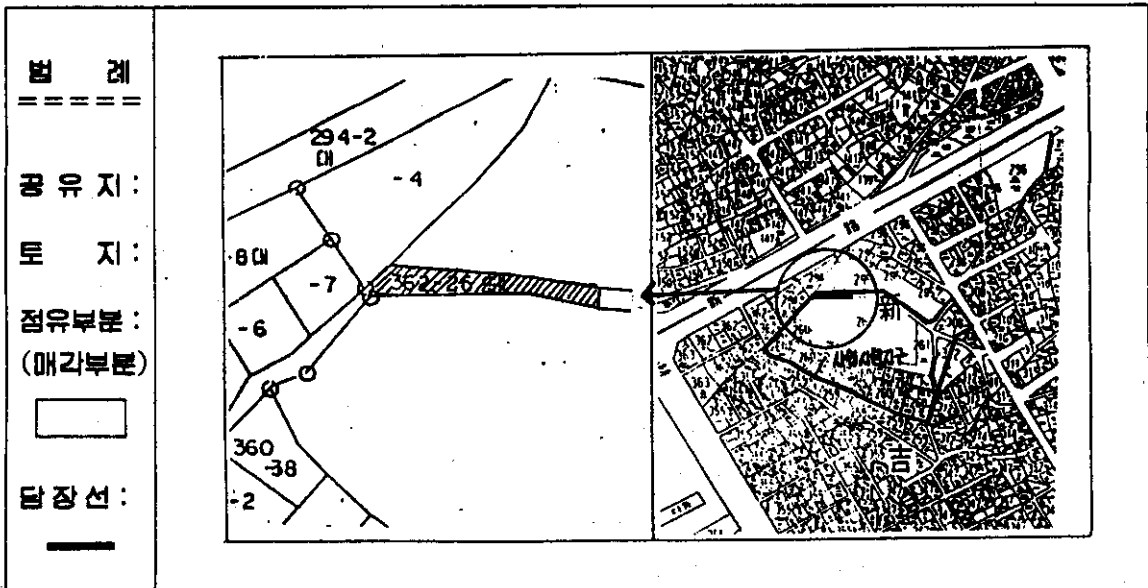
○ 상기 구유재산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직장주택조합 의 3개조합에서 매수하여 신축코자 함.

- 사업시행내역 총 면 적 : 12,624m<sup>2</sup>  
 대상세대 : 3개동(321세대)  
 시 행 처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직장주택조합 의 3개조합

###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조 및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 제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1호

### 5. 현 황 도



#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 5

##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산의 표시			매각대상	매수신청인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면적(m <sup>2</sup> )	주소	성명	
신길1동192-22	대지	13	13	영등포구 신길동196-33	정광준	

## 2. 재산관리현황

관리상태(현용도)	토지의특성	비고
주거용건물과 담장안에 점유 사용	일반주거지역으로 4m도로에 접함.	

## 3. 처분사유

- 상기 구유재산을 매수신청인(정광준)이 주거용건물과 담장안에 점유 사용
- 10년 이상 점유
- 점유인이 신축코자 매수 신청

## 4. 처분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조 및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 제1호

## 5. 현황도

**범례**  
=====

공유지:

토지:

점유부분:  
(매각부분)

담장선:



##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 6

###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 산 의 표 시			매 각 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적(m <sup>2</sup> )	면적(m <sup>2</sup> )	주 소	성 명	
신길6동475-2	대지	184.6	184.6	동작구 대방동395-2	안 성 기	

###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현용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	일반주거지역으로 8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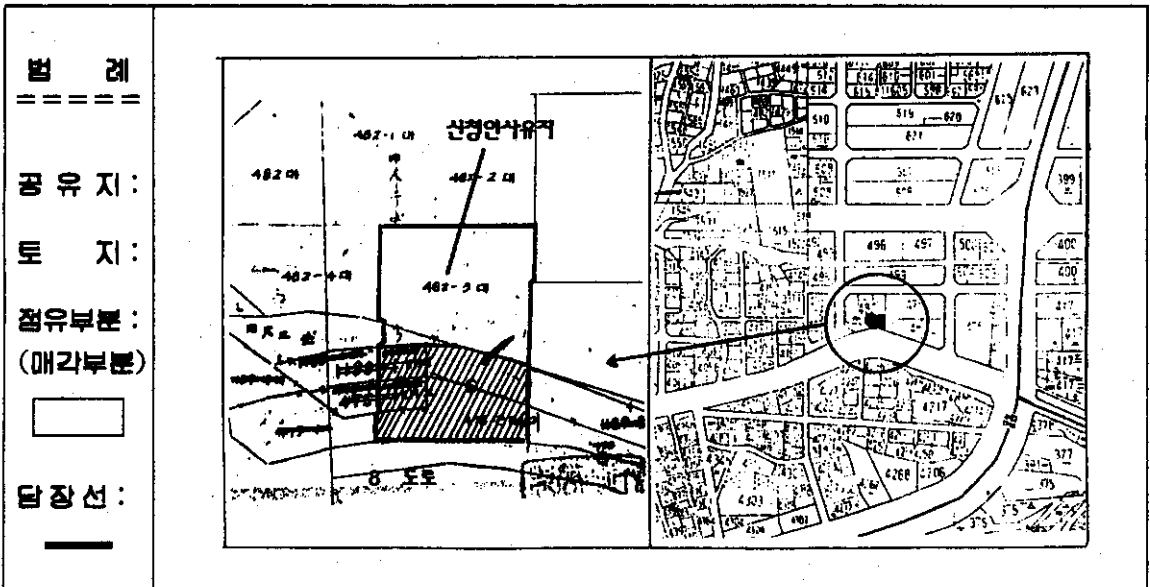
### 3. 처 분 사 유

- 상기 구유재산물 매수신청인(안성기)이 나대지(주차장) 상태로 점유 사용
- 10년 이상 점유
- 점유인이 신축코자 매수 신청

###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4호, 제7호

### 5. 현 황 도



###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 7

####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 산 의 표 시			매 각 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적(m <sup>2</sup> )	면적(m <sup>2</sup> )	주 소	성 명	
대림1동906-117 126	대지	20 8	28	영등포구 대림동907-50호	강 영 진	

####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현용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주거용건물과 담장안에 점유 사용	일반주거지역으로 12m도로에 접함.	

#### 3. 처 분 사 유

- 상기 구유재산을 매수신청인(강영진)이 주거용건물과 담장안에 점유 사용
- 15년 이상 점유(건물은 등기부등재)
- 점유인이 신축코자 매수 신청

####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조 및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 제2호

#### 5. 현 황 도

<p><b>법 레</b> =====</p> <p>공 유 지 :</p> <p>토 지 :</p> <p>점유부분 : (매각부분)</p> <p>담 장 선 :</p>	
---	--